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및 소득재분배 효과

박명호 (홍익대학교)

-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183.3조원 규모의 세출확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전국민 또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구성된다.
- 제14차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약 99.1%는 2020년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그 규모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39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가구총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약 1.7% 개선하였고, 5분위배율은 5.2% 개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지원금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를 공적연금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한 지원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지원금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본바, 상대적으로 무배우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무직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60세 초과 고령가구, 고졸 미만 가구, 1인 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응되는 가구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

은 한국인의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의 위드코로나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밀접 접촉된 이들은 시설입소나 자가격리 등으로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주로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왔지만, 때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인 지원도 수행하였다. 이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들이 한국 가구의 소득 분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정부가 제공한 각종 지원금이 한국 가구의 소득 분배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가구특성 및 지원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정패널조사」의 최신 자료인 제14차 자료를 사용한다.



제14차 「재정패널조사」는 2020년 기준 가구별로 소득수준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액 정보를 제공하여 이 글의 작성 목적에 부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패널조사」는 조사자료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모든 가구에 대한 전수자료가 아니기에 소득 및 정부지원금 관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부의 행정자료로 검증되지 않았기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응답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제정투입 규모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국내에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2차례의 예산과 8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각각의 예산에는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책은 직접적인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현물지원, 금융지원, 세제감면, 전기료·건강보험·임대료 감면, 고용안전망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그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코로나19 지원 재원을 마련하여 순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위기에 직·

간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 VI-5>를 보면,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민생안정 등의 목적으로 2020년의 경우 네 차례에 걸쳐 총 66.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였다. 202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51.8조원, 2022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86.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재원은 총 205,0조원에 달한다.

<표 VI-5>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 규모,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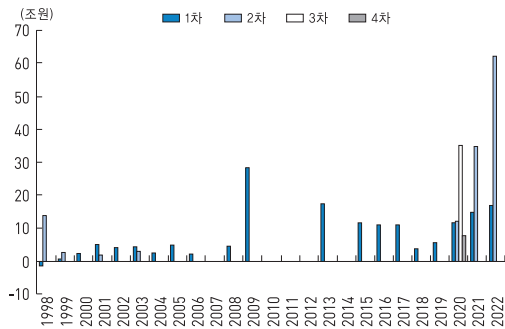
구분		총확정 규모 (조원)		
		세출확대	세입경정 ⁴⁾	
2020년	1회	11.7	10.9	△0.8
	2회	12.2	12.2 ¹⁾	-
	3회	35.1	23.7	△11.4
	4회	7.8	7.8	-
	계	66.8	54.6	△12.2
2021년	1회	14.9	14.9	-
	2회	36.9	34.9 ²⁾	-
	계	51.8	49.8	-
2022년	1회	16.9	16.9	-
	2회	69.5	62.0 ³⁾	
	계	86.4	78.9	

주: 1) 2020년 2회 추경은 전국 217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원(최소)에서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최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단일사업으로 구성됨. 지방비 21조원을 포함하면 총 14.3조원이 편성되었음.
 2) 국채상환을 위한 지출 2조원 제외함.
 3) 국채상환을 위한 지출 7.5조원 제외함.
 4) 세입경정은 감액 경정된 경우만 표시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2022.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까지 총 17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21회 편성하였고, 한 해 동안 3회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경험이 없다. 또한 동일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출확대 기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7.2조원이 최대였고, 1998년 외환위기 때에는 6.7조원이었다. 따라서 최근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12).

[그림 VI-12] 추가경정예산 규모, 1998-2022



주: 1)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확정된 예산임.

출처: e-나라지표, 추경규모(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96).

코로나19 관련 주요 현금지원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한 주요 현금지원 사업들을 연도별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제공한 대표적인 현금지원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다(표 VI-6). 첫 번째 유형은 2020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전국의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202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시작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였다. 1차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일수가 일정기간 이상이며 소득요건을 만족한 무급휴직근로자도 대상이 되었다. 2차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45만 4,900원부터 5인 이상 가구 월 145만 7,500원을 지원하였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며, 1일 최대 13만원을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희망자금’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은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받았고, 경영위기 업종 및 일반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표 VI-6〉 코로나19 관련 주요 현금지원 사업: 2020년

구분	지원대상	지원단가	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가구	40만원(1인) ~ 100만원(4인 이상)	14,3조원 (지방비 2,1조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2차)	특고·프리랜서 등	·신규 150만원 ·기수급자 50만원	·1차: 2,0조원 ·2차: 0,6조원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최대 약 150만원/월 ·유급휴가비: 최대 13만원/일	1,162억원 (지방비 포함)
1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등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 100만원	3,3조원

주: 1) 생활지원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부담.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2022년 각 회.

2021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VI-7). 첫 번째 유형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8월부터 전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였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는 1인당 10만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하는 지원제도이다.

두 번째 유형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다. 2021년에는 신규수급자 100만원, 기수급자 50만원을 지원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2020년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다. 생활지원비는 생계지원 금액이 인

상됨에 따라 1인 가구 월 47만 4,600원에서 5인 이상 가구 월 149만 6,7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 12월 14일부터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10일 기준 1인 22만원에서 5인 이상 48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으로, 3분기 방역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의 명칭으로 3차례 제공된 재난지원금이다.

〈표 VI-7〉 코로나19 관련 주요 현금지원 사업: 2021년

구분	지원대상	지원단가	예산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전국민 88% 등	·국민지원금: 25만원 ·소비플러스: 1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최대 30만원	·총 12조원 (지방비 2,4조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4차)	특고·프리랜서	·신규 100만원 ·기수급자 50만원	·3차: 3,992억원 ·4차: 4,563억원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최대 약 150만원/월 ·유급휴가비: 최대 13만원/일	8,558억원 (지방비 포함)
손실보상금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금(21년 3사분기): 10만원~1억원 ·버팀목자금: 100~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 40~2,000만원	·손실보상: 2,4조원 (1~3차) ·재난지원금: 총 15,4조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1~2022년 각 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4조원 지급」, 2021.10.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현금지원은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지원, 기존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VI-8).

먼저,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이 두 차례 더 추가되어 5차·6차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민영노선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1인당 2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원되며, 1,0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표 VI-8〉 코로나19 관련 주요 현금지원 사업: 2022년

구분	지원대상	지원단가	예산
취약 계층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 6차)	특고·프리랜서 ·5차: 신규 100만원 ·기수급자 50만원 ·6차: 200만원	·5차: 4,094억원 ·6차: 1,5조원
	소득안정 자금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민영 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 4,839억원
	활동 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1인당 200만원 1,012억원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최대 15만원 ·유급휴가비: 최대 22.5만원	2.8조원 (2차추경 반영, 지방비 미포함)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등	·21년 4사분기 손실보상금: 50만원~1억원 ·22년 1사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1억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손실보상: 총 7.4조원 ·5~7차 재난지원금: 총 36.3조원

주: 1)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2022년 2회 추경안까지 반영된 것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년 각 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3;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6.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0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5.

2022년 중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경우,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의 개편이 이뤄졌다. 유급휴가비용도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이 축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한 현금지원 사업의 유형은 2021년도와 동일하며, 다만 사업 명칭과 지원단가가 변경되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연 매출액이 30~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하였다.

「재정패널」 상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2021년 6~10월에 조사된 제14차 「재정패널조사」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응답가구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았는지 조사하였다. 이때 정부지원금 유형을 기본소득형, 생계지원형, 재난피해지원형, 소득 및 일자리 지원형, 기타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소득형에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한다. 생계지원형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계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포함된다. 재난피해지원형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를 받은 가구에 지급된 생활지원



비 등이 포함된다. 소득 및 일자리 지원형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및 일자리에 직접적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에는 이동통신요금지원, 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비대면학습지원 등 간접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된다.

제14차 「재정패널조사」에 유효응답 가구는 총 8,706개이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기본소득형의 경우, 수급 가구수가 8,627개로 수급률이 99.1%이고,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76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9).

〈표 VI-9〉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2021년 재정패널조사

지원금 유형	수급 가구수	수급률 (%)	지원금 (만원)		
			평균	최소	최대
기본소득형	8,627	99.1	78.6	40	760
생계지원형	180	2.1	73.8	10	450
재난피해지원형	37	0.4	146.0	30	1,399
소득·일자리 지원형	538	6.2	189.2	20	1,000
기타	1,210	13.9	17.4	2	182
합계	8,630	99.1	94.9	4	1,539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2022.

가구 특성별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총액을 살펴본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영업자일수록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을 많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이거나 대졸 초과인 경우, 그리고 연령대가 매우 젊거나 고령인 경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

원금을 상대적으로 조금 수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각각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I-10).

〈표 VI-10〉 가구 특성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현황: 2021년 재정패널조사

가구주 특성	수급 자수 (명)	수급률 (%)	지원금 (만원)		
			평균	최소	최대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2,725	98.8	62.6	40, 1,000
	유배우자	5,905	99.3	109.8	4, 1,539
성별	여자	2,248	99.4	70.4	40, 1,000
	남자	6,382	99.0	103.6	4, 1,539
종사상 지위	무직	1,930	99.4	70.5	40, 1,020
	임금근로자	4,547	99.0	91.8	4, 1,000
	자영업자	2,153	99.2	123.3	40, 1,539
연령대	30세 이하	447	95.9	60.1	40, 1,000
	31~40세	983	99.0	104.0	40, 700
	41~50세	1,596	99.6	117.2	4, 1,539
60세 이하	51~60세	2,044	99.3	109.4	6, 1,110
	60세 초과	3,560	99.3	78.5	40, 1,020
	고졸 미만	2,056	99.6	73.2	40, 1,020
교육 수준	고졸	2,809	99.5	101.3	4, 1,110
	대졸 미만	913	99.3	106.2	40, 1,539
	대졸	2,536	98.4	101.5	40, 1,120
	대졸 초과	316	97.5	94.3	40, 570
가구원 수	1인	2,077	98.6	50.5	40, 650
	2인	2,734	99.3	84.3	60, 1,020
	3인	1,605	99.3	113.4	80, 1,110
	4인 이상	2,214	99.3	136.2	4, 1,539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2022.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14차 재정패널조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한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긍정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부지원금이 없었을 경우의 가구총소득 분배지표와 정부지원금이 제공된 후의 가구총소득 분배지표 간의 차이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소득분배지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을 사용한다.

먼저,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본바, 가구원수로 가구총소득을 균등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리고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지니계수를 하락시켜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경우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정도는 1.2~1.7% 사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VI-11).

〈표 VI-11〉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소득재분배 효과 :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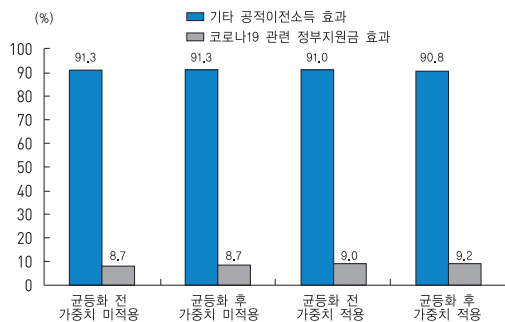
		지니계수		지니계수 하락률(%)
		수급 전	수급 후	
가구가중치 미적용	균등화 이전	0.432	0.426	1.23
	균등화 이후	0.379	0.373	1.68
가구가중치 적용	균등화 이전	0.421	0.416	1.22
	균등화 이후	0.368	0.362	1.70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2022.

이런 지니계수 개선효과와 정도에 대한 간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효과와 비교해보면, 2020년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은 전체 공적 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효과와 약 8.7~9.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은 보편적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코로나19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정부지원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당연히 존재하였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VI-13).

[그림 VI-13]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의 상대적 크기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2022.

특히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 중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가구평균은 448.6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가구평균인 94.1만원의 약 4.77배이다. 그럼에도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9.9~10.5배로 공적 이전소득 1단위당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보다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이 더 큰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5분위배율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가구 가중치 적용 여부 및 균등화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5분위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하락 정도는 약 4.5~5.2%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I-12).

〈표 VI-12〉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소득재분배 효과 : 5분위배율

		5분위배율(배)		5분위배율 하락률(%)
		수급 전	수급 후	
가구가중치 미적용	균등화 이전	12.437	11.823	4.94
	균등화 이후	8.554	8.120	5.07
가구가중치 적용	균등화 이전	11.666	11.118	4.70
	균등화 이후	8.194	7.772	5.16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2022.

가구 특성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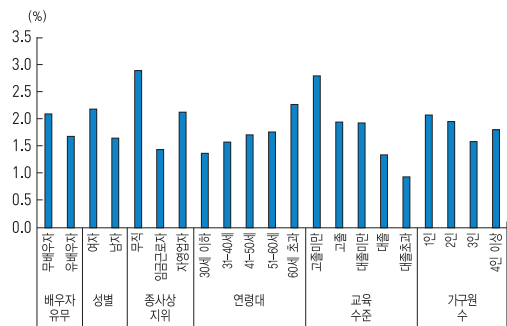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구 특성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면 [그림 VI-14]와 같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무배우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무직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60세 초과 고령가

구, 고졸 미만 가구, 1인 가구 계층에서 대응되는 가구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계층은 중사상지위가 무직인 가구로서 지니계수가 약 2.9% 개선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인 가구의 지니계수도 약 2.8%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반면, 교육수준이 대졸 초과이거나 대졸인 가구 및 중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가구는 지니계수 개선정도가 각각 약 0.9%, 1.3%, 1.4%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한 계층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VI-14] 가구 특성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주: 1)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니계수의 변화 산출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2022.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현금지원 정책 중 주요 중앙정부 정책을 예산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실제 정부가 편성한 예

산과 집행실적은 상이하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 제도가 수급요건을 설정한 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서 적격자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며, 사후 정산과정도 거치기에 이런 예산과 실적의 차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을 포괄해야 하며, 현금지원 외의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도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자료의 생성 및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나 응답 오류 가능성 등 조사자료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가 제공한 현금 지원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 정부의 현금지원은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을 모두 떨어뜨려 일정 수준 소득분배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입된 재정의 규모에 비하여 개선정도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은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와 재정의 투입방식-선별 또는 보편-에 따라 상이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국가재정은 유한하며, 이번 코로나19 대응 재원의 상당부분을 나라빚을 통해 조달하였다는 점은 비용효과적인 정책대안의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존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